

제 493 호

1975. 3.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례

## ◎조례

제 937 호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 개신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	3
--	---

## ◎규칙

제 1453 호 : 서울특별시 구세정위원회 규칙 중개정규칙	3
제 1454 호 : 서울특별시 관광 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 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4
제 1455 호 : 서울특별시 임시 고용원 규정 중개정규칙	6
제 1456 호 : 서울특별시 사무봉장규칙 중개정규칙	11
제 1457 호 : 서울특별시 민사규칙 중개정규칙	12
제 1458 호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 중개정규칙	16

## ◎고시

제 38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16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68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청업체 지정 공고	21
제 69 호 : 도시 계획시설 ( 도로 ) 실시 계획 공람 공고	22
제 70 호 : 중구청 장공인 개작 공고	23
제 72 호 : 도봉구청 장공인 개작 공고	23
제 73 호 : 1975년도 실업계 학생 현장 실습 업체 협의 지정 공고	24
제 7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청업체 대체 지정 공고	26
제 55 호 ( 용 산 구 광 고 ) : 공인 개작 공고	26
③ 사 명	29

조례
----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1975년 3월 28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937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중요재산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 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중요재산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한다. 다만, 조건없이 재산의 기부를 원하는 자로부터 이를 청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건당 예상가격 500만원 이상의 재산

다만,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평 이상의 재산(예상가격 500만원 이하 포함)

2. 제 1호 이외의 재산으로 교육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칙
----

서울특별시 구세정위원회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3 호

서울특별시구세정위원회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구세정위원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3항중 「부위원장은 세무제 2과장」을 「부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9-4 제 493 호

시 보

1975.3.29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  
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4 호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  
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면제신고) 조례 제 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면제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  
식에 의한 면제 신고서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외국관광객 알선  
확인서 및 수수료 지불영수증(정  
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월 5  
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제 1호서식

## 유흥음식세 면제신고서

## ○ ○ 구청장 귀하

영업장소 재지		
특별징수의무자		옥호
면하는 행위인원		단체수
제작하는 표준액		
고내세율		
주용면제세액		

첨부: 외국관광객 알선 확인서 부

수수료 지불영수증(정산서) 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제 493 호

사 보

1975.3.29 29-5

별지 제 2호 서식

## 외국관광객 알선 확인서

영업장소 제지

특별징수의무자

목호

## 확인내용

행위일자	단체명	행위인원	요금영수증번호	행위요금	비고

위와같이 상기업소에 대하여 외국관광객을 알선하여 주었음은 서울특별시 관광휴양업에 대한 유흥음식점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함.

년 월 일

○ ○ 여행사 ◎

29-6 제 493 호

서 보

1975.3.29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 규정 중 개정  
규칙을 아래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5 호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

규정 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임시직의 임면) ① 임시직은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회계년도초에 본청은 시장, 구청은 한다.

(별표 2)

임시고용원 보수지급기준표

등급	보수의 한계	직	종
1	15,000 원	경비원, 차량정리원	
2	16,000	사환, 전달부	
3	17,000		
4	18,000		
5	20,000	전달부	
6	21,000	잡부	
7	22,000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7

등급	보수의 한계	적 종
8	24,000	안내원, 타자원, 기관수, 경리원, 감시원, 관리원, 경비원, 미용사, 수위, 청소원, 시험원, 원예사, 전달부, 직공, 경비원, 잡부, 전공, 청부, 위사부, 행정보조원
9	25,000	기사, 경비원, 사감, 차량정비원, 행정보조원, 전공, 청부, 타자원, 경리원, 교환원, 감시원, 수위, 시험 원, 운전원
10	26,000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민원보조원, 전공, 행정보조원
11	27,000	<del>교도원, 기관수, 기사, 기계공, 경비원, 보모, 수위, 시험원, 원예사, 안내원, 의료요원, 잡부, 행정보조원</del>
12	29,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감시원, 가족계획요원, 기계공 보모, 사감, 시험원, 경비원, 전공, 타자원, 행정보조 원, 기사, 경리원, 관리원
13	30,000	기사, 경리원, 관리원, 행정보조원, 소독수, 천공원
14	31,000	기사, 기계공, 운전원, 조정수, 직공, 경비원, 전공 행정보조원,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경비원
15	32,000	기관수, 기사, 결핵관리요원, 기계공, 관리원, 상담원 원예사, 아동복지지도원, 운전원, 직공, 전공, 행정보 조원
16	33,000	기사, 간호원, 가족계획요원,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전공
17	34,000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감시원, 천공원
18	35,000	기계공, 운전원, 직공, 경비원, 청원경찰

29-8 제 493 호 시 보 1975.3.29

등급	보수의 한계	직종
19	37,000	안내원, 직공, 청원경찰
20	38,000	가족계획요원
21	40,000	기판수, 기계공, 직공, 전공, 축산원, 행정보조원, 마부, 천공원
22	41,000	
23.	42,000	교도원, 기계공, 사서요원, 안내원
24	43,000	운동장지도원, 행정보조원
25	45,000	구호협회간사, 상담원, 조절수,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26	46,000	기사, 시험원, 운전원, 부랑아전문위원,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행정보조원
27	47,000	교도원,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28	49,000	
29	50,000	기사
30	52,000	연예사
31	53,000	정비원, 기판수, 기계공, 전공, 오퍼레이터
32	54,000	기판수, 전공
33	56,000	연예사
34	57,000	
35	58,000	교도원, 기사, 연예사, 전공, 행정보조원, 오퍼레이터
36	59,000	의료요원
37	60,000	
38	62,000	연예사, 전문위원, 교관
39	63,000	기사, 정비원,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40	64,000	기판수, 기사, 기계공, 전문위원, 전공
41	66,000	교도원, 연예사, 정비사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9

등급	보수 외 한계	작	총
42	67,000		
43	68,000	행정 보조원, 프로그래머	
44	70,000	수의사, 연예사	
45	71,000		
46	72,000	기사	
47	74,000	연예사, 프로그래머	
48	75,000	전공	
49	78,000	운전원, 정비원	
50	80,000	연예사	
51	81,000	전공	
52	82,000	승무감독	
53	84,000	연예사	
54	88,000	연예사, 씨스템 아날리스트, 행정보조원	
55	89,000	의사	
56	93,000	의사	
57	107,000	의사	
58	113,000	연예사	
59	117,000	연예사	
60	143,000	연예사	
61	147,000	의사	
62	160,000	의사	
63	200,000	의사	

29-10 제493호

시 보

1975.3.29

(별표 3)

전자계산분야 임용기준

직 종	전 형 방 법	비 고
시스템 아널리스트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논문,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작성검사,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천 공 원	1. 서류심사 2. 실기시험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퍼레이터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영어, 전자계산 조직이론) 3. 면접시험, 채용신체검사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6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 2 항제 3 호중 마목을 아목으  
로 하고, 아목내지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자지사항시달 및 조치상  
황문식

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  
한 사항

사. 주요업무 일일보고

제 14 조제 2 항제 3 호 나목중 「한강」  
을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 4 호 마  
목중 「지하철건설본부」를 「지하  
철본부」로 한다.

제 25 조제 2 항제 2 호 가목 및 나목  
중 「및 단속」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자. 간호보조원 양성에 관한 사항  
제 37 조중 「양정제」를 각각 「식생  
활개선제」로 하고, 동조제 2 항제 1 호  
중 나목 내지 거목을 사목내지  
버목으로 하여 나목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생활개선 및 미곡소비절약

다. 식생활개선풍보 및 행사

라. 식생활개선 학성지도

마. 식품개발 및 유관단체간독

바. 각종 요리강습 및 지도간독  
제 70 조제 2 항제 1 호중 사목을 삭제하  
고, 동항 제 3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연차량의 단속

제 73 조 제 2 항중 제 1 호 및 제 2 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설관리제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의 행정  
적인 관리

나. 도로상의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

다. 그로부지점용 및 사용허가

라. 운교사용허가(관리)

마. 도로상의 장애물관리

바. 도로수익자 부당금과정에 관  
한 사항

29-12 새 493 호

시

1975.3.29

사. 도로부지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사항

- 아. 도로부지청기등기에 관한 사항  
자. 과내 다른계 주관에 속하지  
· 아니하는 사항

2. 공지 관리 제

- 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  
가 (시공감독은 제외)

-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 (시공감독은 제외)

- 다. 하천 및 구거부지 첨기등기  
에 관한 사항

- 라.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 및  
사용허가

- 마. 하천 및 구거부지 용도 폐지  
에 관한 사항

- 바. 하천부지교환에 관한 사항

- 사. 폐원부지 양수에 관한 사항

- 아. 하천수익자 부담금과정에 관  
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축 [인]

1975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7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 단서 및 제 5조의 2 중 「근  
무평정조정위원회」 다음에 각각  
· 및 「근무평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를 삽입한다.

제 6조 제 2 항 및 제 109조 제 2호  
중 「부청장」을 각각 「시민생활  
국장」으로 한다.

제 35조 제 4 항 중 「이 경우 임용  
급류는 5급율류 및 기능직 9 등  
급이하 공무원에 한한다」를 「이  
경우 임용급류는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졸업자 5급갑류 또는  
기능직 8 등급으로,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는 5급율류 또는 기능직 9  
등급이하로 하며 제 2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특별임용할 수 있다」  
로 한다.

제 45조 중 「3급」을 「4급」으로  
한다.

제 57조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p>(③) 새마을교관으로 계속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영제 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승진한다.</p> <p>제 80조 제 1항단서의 절차 구분란중 「한강건설, 지하철건설」을 「주택건설, 지하철본부」로 하고, 구출장소 4갑이하 제출절차란중 「구」를 「시민생활국」으로 하며 수도사업소란을 삭제하고 3급갑류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란중 「3율」을 「4갑이상」으로 「4갑이하」를 「4율이하」로 하며, 동조제 2항중 제 4호를 삭제한다.</p> <p>제 95조 제 4항중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서」를 「매년 1월중」으로 한다.</p> <p>제 111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표창에는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으로 구분하며 개인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범공무원: 4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유신이념이 투철하며 시정발전 및 새마을사업에 공헌한</p>	<p>자로서 월 5,000원의 상여금을 1년간 지급한다.</p> <p>2. 우수공무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정완수를 위한 체임십이 왕성하고 창의력을 발휘 능동적으로 집무하여 시정발전에 유공한자</p> <p>3. 유공공무원: 시정발전에 유공한 정년퇴직자, 순직자, 민지자 및 타부처전출자</p> <p>제 166조 제 2항중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 및 제 4호를 제 2호 및 제 3호로 하며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정년퇴직</p> <p>서울시재직근속 10년미만은 2만원 서울시재직근속 20년미만은 3만원 서울시재직근속 20년이상은 5만원 현표 18 및 별지제 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 57호서식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별표제 18>		피 평정자 와 확 인 자		
기 관 별	구 分	피 평정자	평 정 자	확 인 자
1. 본 청	4 갑이상 4 을이하	4 갑이상 4 을이하	실 과 장 제 계 장	관 국 장 실 과 장
2. 구 청	3 을 4 갑이하		국 장 실 과 장	구 청 장 국 장
3. 출장소	3 을 4 갑이하		출장소 장 실 과 장	구 청 장 출장소 장
4. 동	3 을 4 갑 4 을이하		시민생활국장 구 및 출장소총무과장 동 장	구 청 장 시민생활국장 또는 출장소장 구 및 출장소총무과장
5. 공무원교육원 주택건설사업소 지하철본부	3 을이하		부 과 장 과 장 과 장	원 장 소 장 본 부 장
6. 농촌지도소	3 을 4 갑 4 을이하		농정과장 소 장 계장, 지소장	산업국장 농정과장 소 장
7. 노동위원회사무국	3 을 4 갑이하		사회과장 소 장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8. 수원지사무소 수도관리사업소	4 갑 4 을이하		소 장 제 계 장	수도국부이사관 소 장
9. 3갑이상을 으로 하는 사업소	3 을 4 갑이하		소 장 과 장	본청주관국장 사업소장
10. 3을이하를 으로 하는 사업소	4 갑이상 4 을이하		본청주관과장 및 구 시민생활국장 사업소장 또는 구주 관과장	본청주관국장 및 구 청장 본청주관과장 및 구 주관국장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15

구 분	폐정점자	평 점 가	확 인 자
기 관별 11. 건설국산하 3을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3 을 4 갑이하	건설국부이사관 소 장	건 설 국 장 부 이 사 관
12. 보전 사회국산하 3 갑이상 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4 갑이 상 4 을이 하	원장 및 소장 파 장	보전 사회 국 장 원장 및 소장

- 다만 공보실소속 4갑이상 및 시민회관3을에 대한 확인자는 내무국장
  - 행정과 보건소는 시산하 전병원 또는 보건소를, 동은 구산하 전동을  
단위로 하여 분포비율을 맞출것.

(별지제 55호서식)

### 회 정 자 명 단

三

1 차 평정판 : 4, 6 월 말 평정사 기재  
2 차 평정판 : 10, 12 월 말 평정사 기자

1988. 2. 27. (설정문자 59 / 59)

29-16 제 493 호

시

보

1975.3.29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3월 29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8 호

서울특별시기획조정  
위원회규정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 1 항 중 «각 국장과 비상  
계획관, 주택관리관» 을 «각 국장  
(비상계획관, 감사관, 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사 제 3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로서 시설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사  
업(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와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3. 26.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17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동구 구의동 ~ 광장동	5.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75.1.15~75. 9. 1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어린이대공원 ~ 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
3. 사업 규모 : B = 50 m L = 1,300 m	7.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주소 및 성명 : 별첨

## 인 가 증 (안)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동구 구의동 ~ 광장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어린이대공원 - 천호대교간 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50 미터 L = 1,300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6. 사업기간 : 75.1.15 - 75. 9. 15
7.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  
의의 권리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 .

서 울 특 별 시 장

## 인가 조건

1. 사업 실시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설계도서(영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9-18

제 493 호

시 보

1975.3.29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합후표시 (주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1	성동구 구의동	40	답	684	40-4	도로	347	중구다동 10-3	윤봉연
2	"	40-1	대	105	40-5	"	56	"	윤봉연
3	"	41-1	전	248	41-4	"	144	"	윤봉연
4	"	147-4	전	846	147-20	"	439	"	윤봉연
5	"	147-1	대	116	147-1	"	41	"	윤봉연
6	"	147-7	대	134	147-7	"	109	"	윤봉연
7	"	147-10	전	122	147-10	"	90	성수동2가 335-103	김만수
8	"	147-3	전	23	147-13	"	17	충주시단월동 219	홍영자
9	"	146-2	대	97	146-2	"	31	구의동 146	이홍구
10	"	148	수	936	148-1	"	321	서울시	
11	"	175	답	496	175-1	"	15	"	
12	"	176	전	85	176-1	"	20	"	
13	"	177	전	561	177-1	"	471	"	
14	"	178	전	663	178	"	91	"	
15	광장동	399-1	대	838	399-4	"	116	종로구명륜동 1가 29	조홍제
16	"	399-2	대	208	399-5	"	127	서울시	
17	"	399-3	대	129	399-6	"	97	중구남대문로 2가 130	Co.한일은행
18	"	400	전	162	400-2	"	89	종로명륜동 1가 29	조홍제
19	"	401-1	전	51	401-1	"	33	"	"
20	"	401-3	답	465	401-3	"	75	종로구신문로 2가 1-111	고홍명
21	"	397	대	266	397-2	"	263	중구남대문로 2가 130	Co.한일은행
22	"	398	지소	338	398-1	"	311	종로구신문로 2가 1-111	고홍명
23	"	394-3	답	1311	394-26	"	413	성동구황학동 753	박수호
24	"	396-2	전	343	396-2	"	336	경기광주회촌면광동리 331-10	여홍민씨양 호·공파종중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19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 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소	성명
25	광장동	246	답	883	246-2	도로	49	광장동 291		박필원
26	"	244-2	답	692	244-8	"	145	광장동 331-3		임윤내
27	"	237	대	168	237	"	150	종로구 명륜동 1가 29		조홍제
28	구의동	산35-3	임야	정 103	35-7	"	0319	구의동 198		김호송
29	"	산35-4	"	3,213	35-8	"	1014	중구동 자동 35-28		이재화
30	"	산35-5	"	0,527	35-9	"	0210	"		이재화
31	"	산35-6	"	3,312	35-10	"	1526	"		"
32	"	산36-1	"	5,900	36-1	"	0227	서울시		
33	"	산31-2	"	4,823	31-6	"	0510	종로구 명륜동 2가 86-20		유창준
34	"	산31-5	"	0,201	31-5	"	0019	"		유창준
35	"	산30-4	"	1,703	30-5	"	3914	용산구 한남동 120-18		오경석
36	"	산17-2	"	2,100	17-20	"	0328	중구동 자동 35-28		이재화
37	구의동	산17-8	"	2,000	17-21	"	1116	"		"
38	"	산17-13	"	3,502	17-22	"	1416	"		"
39	"	산 29	"	2,100	29-1	"	0111	서울시		
40	광장동	산81-1	"	2,926	81-13	"	0723	종로구 명륜동 1가 5-33		조석태
41	"	산81-3	"	4,030	81-15	"	1016	종로구 신문로 2가 1-11		고홍명
42	"	산56-3	"	5,504	56-3	"	2322	종로구 명륜동 1가 29		조홍제
43	"	산56-1	"	0,200	56-1	"	0123	"		"
44	"	산56-6	"	1,123	56-6	"	0912	"		"
45	"	200-2	철선	50	200-6	"	6	서울시		
46	"	200-3	"	20	200-3	"	15	서울시		
47	"	200-4	전	43	200-8	"	29	神奈川県 横浜市若松町 1丁目 9		김점개
48	"	200-1	전	937	200-5	"	686	"		"

29-20 제 493 호

## 시 보

1975.3.29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49	광장동	201-2	철선	97	201-2	도로	60	서울시	
50	"	201-2	"	97	201-4	"	6	서울시	
51	"	201-1	도로	1	201-1	"	1	국유지	
52	"	218-1	대	24,103	218-3	"	600	중구충무로1가24-31	대한제지@00.
53	"	199-1	전	534	199-3	"	469	광장동 286	고희성
54	"	310	전	606	310-2	"	5	중구도동 1가27-3	명규영
55	"	199-2	대	561	199-2	"	558	신당동 420-20	노원동
								미아동 1170	오술숙
56	"	198	대	226	198-2	"	38	신당동 404-3	이준성
57	"	197	전	51	197-2	"	41	"	"
58	"	196-1	전	252	196-5	"	247	"	"
59	"	195-1	대	363	195-1	"	296	중구충무로1가24-31	대한제지@01.
60	"	195-2	대	13	195-2	"	13	"	"
61	"	194-3	전	48	194-3	"	1	중구소공동 112-2	이원순
62	"	194-2	임야	164	194-2	"	20	중구율지로 2가 148	상전법
63	"	196-2	하천	147	196-2	"	49	광장동 303	김명준
64	"	193-1	하	31.4	193-3	"	0.6	신당동 404-3	이춘성
65	"	192-1	하	99	192-1	"	37	"	"
66	"	191-1	하	74	191-1	"	68	"	"
67	"	191-2	전	30	191-2	"	17	"	"
68	"	190-3	대	834	190-5	"	107	동대문구화경동 119-9	윤영은
69	"	190-3	대	834	190-6	"	60	"	"
70	"	190-4	하	48	190-8	"	33	신당동 404-3	이춘성
71	"	190-3	대	834	190-7	"	3	동대문화경동 119-9	윤영은
72	"	319-4	하	51	319-8	"	3	신당동 407-17 신월동 97-23 전동동 644-88	박순실 박현연 박현연

제 493 호 시 보 1975. 3. 29 29-21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3	평장동	246-1	대	261	246-1	도로	261	종로구 명동동 1가 29	조홍제
74	"	396	대	135	396	"	135	경기도 양주군 회촌면 평동리	여홍미씨
75	"	401-2	전	235	401-2	"	97	서울시 131-1	양동우씨
76	"	239	답	520	239-2	"	225	서대문구 연희동 1-86	김재철
77	구의동	147-12	전	23	147-12	"	23	구의동 147-12	황원익
78	"	42	대	55	42	"	55	중구다동 10-3	윤봉연
79	"	41-2	전	30	41-2	"	30	구의동 41-2	김사일
80	"	147-8	전	252	147-8	"	252	중구다동 10-3	김봉연
81	"	178-1	전	138	178-1	"	138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설
82	"	178-2	전	111	178-2	"	111	"	"
83	"	147-5	대	119	147-5	"	119	중구다동 10-3	윤봉연
84	"	147-6	전	104	147-6	"	104	"	"
85	"	147-9	전	39	147-9	"	39	"	"
86	"	산36-4	임야	0715	36-4	"	0715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설
87	"	산31-3	"	0217	산31-3	"	0217	종로구 명동동 2가 86-20	유창준
88	"	산31-4	"	0319	산31-4	"	0319	"	"
89	"	산36-3	"	1300	산36-9	"	0819	서울시	
90	"	산35-	"	0500	산36-10	"	0401	중구명동 2가 53-1	이종설
91	"	산36-2	"	1400	산34-2	"	1015	동대문구 창신동 329-17	연근덕

### 공 고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68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  
생산자경업체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 생산자경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 생산자경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3. 26

서울특별시장

29-22 제 493 호

시

보

1975.3.29

## 1. 지정업체

단위 : 원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제 지	수 출 품 명	75 수 출 목 표 액
472	광성섬유공업사	이광무	성동구성수2가동310-52	메리야스	80,000
923	온진물산주식회사	홍순호	영등포구서흥2동675	엘 범	420,000

## ◎ 서울특별시공고제 69호

## 공 람 개 요

## 도시계획시설(도로)

## 설시계획공람공고

1. 진설부고시제 257호(71.5.7)로  
고시된 불광천복개공사구간에 저촉  
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설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진설국진설행정과  
및관할은평률장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3. .

- 사업시행의위치: 서대문구불광동
- 사업의종류및명칭: 불광천복개공사
- 사업의규모: B=25m L=520m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75.3.20 ~ 75.12.31
- 수용또는사용할 토지및 건물  
서대문구불광동315 대 30평 및  
본 지번상 건물
-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장

## 1. 건물

## 재 산 조 서

소재지	지번	구 조	전 평	소 유	자
불광동	315	세 앤부 럭 세 앤와습	12 평	불광동	315
					권 우 선

## 2. 토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불광동	314	대	30 평	불광동	315
					권 우 선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23

○ 서울특별시 공고제 70 호

중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중구청장  
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3. 26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중구청장의 직인

중구청장의 개인

2. 사용일시 :

1975. 4. 1. 09:00

3. 공인의 인영

제기인영

직  
인



제  
인



개각인영



○ 서울특별시 공고제 72 호

도봉구청장공인개각공고

다음과 같이 당시 산하 도봉구청  
장의 공인을 폐기하고 개각 사용토  
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3. 28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도봉구청장직인

도봉구청장개인

2. 사용일시 : 1975.4.1.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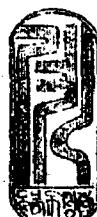
29-24 제 492 호

지

보

1975.3.29

## 3. 공인의 인영

폐기인영개작인영폐  
기  
인개  
작  
인

## ◎ 서울특별시공고제 73호

1975년도 실업계 학생 현장실습 협의회

실습 업체별 의지 정 공고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2에 의거

75년도 실업계 학생현장실습협의회 지정된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3. 29

서울특별시장

## 실업학교 현장실습 산업체 지정 내역 (승락내역)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학교명	소재지	설립학과	설립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삼척공전	삼척	기계과 5	7-20-9-20	쌍용상화동해공장	강원도 삼척군	진봉현	
"	"	화공과 5	"	"	"	"	
서울대	서울자원과	2	7-20-8-25	"	"	"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25

현장 실습 학교				현장 실습 대상업체				
학교명	소재지	실습학과	실습 학생수	실습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서울대	서울	화공과	2	7.20~8.25	영웅상회동해공장	강원도삼척군	진봉현	
"	"	계료과	2	"	"	"	"	
"	"	자원과	2	"	영웅상회영월공장	강원도영월군	"	
"	"	화공과	2	"	"	"	"	
"	"	계료과	2	"	"	"	"	
울산공대	울산	화학과	3	7.1~8.30	동서석유화학	서울중구	유양수	
서울공대	서울	"	2	8.1~8.30	"	"	"	
인하공대	인천	전기과	1	"	현우산업	"	박정	
"	"	기계과	1	"	"	"	"	
충남공대	대전	공업교육	10	7.21~8.20	청수침업품현원	서울용산	이기일	
한양대학	서울	건축과	1	8.1~8.30	현우산업	서울중구	박정	
"	"	토목과	1	"	"	"	"	
서울공대	"	계료과	5	7.20~8.10	해남사	목포시신정동	김준형 속식.	
"	"	자원과	3	7.20~8.5	일신산업	중로관통동	이석준 교통비	
"	"	가계설비	2	7.20~8.25	아세아자동차	전남광주광장	장상태 자바부	
"	"	기계전기	7	"	이천전기산업	인천시	서상록 담	
성균관대	"	전기과	5	7.1~13~2~3	이천전기공업	"	"	
"	"	기계과	5	"	"	"	"	
중앙대	"	전기과	2	7.20~8.20	"	"	"	
연세대	"	"	3	7.20~8.30	"	"	"	
고려대	"	"	5	7.15~7.30	"	"	"	
서울대	"	기계화공전기	15	7.20~8.25	대한석유공사	울산	유재홍	
연세대	"	화공과	3	7.20~8.20	"	"	"	
"	"	전기과	2	7.20~8.30	"	"	"	
"	"	기계과	2	7.15~8.20	"	"	"	
고려대	"	화공과	2	7.15~7.30	"	"	"	
"	"	기계과	1	"	"	"	"	
숭천대	"	전기과	1	7.20~8.20	"	"	"	

20-26 제 493 호

시

보

1975.3.29

현장설습학 교					현장설습대상업체				
학교명	소재지	설습학과	설 습 학 생 수	설습시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비고	
중앙대	서울	화공과	2	7.20 - 8.20	대한석유공업	서울	유재홍		
승천대	"	전 산	2	7.21 - 8.21	"	"	"		
연세대	"	전 기	4	학교와타협	국제전기	서울	공농동 양재권		
고려대	"	"	5	조정 "	"	"	"		
건국대	"	"	4	"	"	"	"		
승천대	"	"	5	"	"	"	"		
중앙대	"	"	4	"	"	"	"		
연세대	"	전자과	3	7. 1 - 8.30	민성전자	서울	동촌동 박조태		
승천대	"	"	2	7.20 - 8.20	"	"	"		
광운전자	"	응용전자	2	"	"	"	"		
성균관대	"	전 자	3	76.1.13-2.13	"	"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 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중 소재지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  
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 공고한다.

1975. 3. .

서울특별시장

지정취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1028	아진산업(주)	황봉순	도봉구수유동 573-3	인삼차

1028	아진산업(주)	황봉순	도봉구수유동 558-8	인삼차
------	---------	-----	-----------------	-----

## ◎ 용산구 공고 제 55 호

공인개작공고  
당구 판하 동장의 공인이 노후 마  
멸되어 개작하였기 그 개작인영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함.

1975. 3. 24

용산구청장

1. 사용일시 : 75.4.1. 09:00

2. 공인명 : 동장지인

3. 공인의 인영 : 다음

공인개작인영				
후암동장	용산2가제1동장	용산2가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제2동장		남영동장		청파제1동장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청파제2동장		원효로제1동장		원효로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제2동장		효창동장		용문동장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구인영	개작인영

29-28 제 493 호 시

보

1975.3.29

한강로 제 1 동장		한강로 제 2 동장		한강로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제 3 동장	이 촌 제 1 동장	이 촌 제 2 동장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이태원 1 동장		이태원 2 동장		한남제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1 동장	한남제 2 동장	서빙고동장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구 인영	개자인영	

제 493 호

시

보 1975.3.29 29-29

보 풍 동 장			
구 인 영	개 자 인 영		
사 령			
◎ 1975. 3. 26	김 철 수	마 포 구 지방건축 국원 보	정 인 질
소방령에 입함.		온·평률장소	장 기 관
6호봉을 균함.		천호률장소	한 경덕
성동소방서장에 보함.		종로구 지방건축 원	김 성연
◎ 1975. 3. 27		주택건설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녹 지 과 사무관 정준영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3. 31	
동대문구 지방건축 국원 박현식		독도수원자 사무소 지방화공 가나보이보	신 무상
도봉구 지방건축 국원 보		75.3.25 일자 발령 제 128 호 를 동일자로 취소함. (본인포기)	
		경 축 과 지방건축 국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